

1.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 개관

앞서 본 바와 같이 광의의 내부통제는 회사가 경영상의 여러 위험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관리 내지 통제하는 것으로써 그 안에는 준법감시, 내부회계관리, 위험관리,⁴⁾ 정보보호, 금융소비자보호 등이 포함된다.⁵⁾

보험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2000년 보험업법 개정⁶⁾ 당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3년 보험업법 전면개정 당시 준법감시인의 임면, 자격요건, 불이익금지, 의무와 권한 등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세부적 내용이 정비되었다.

이후 2016년 금융권역 통합법률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⁷⁾되면서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공통 적용되는 내부통제제도(준법감시 포함)와 위험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그와 함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조항이 대부분 삭제되었으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기준과 관련된 일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사항 및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관련 사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 다른 금융통합법률로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의 판매 및 자문 업무와 관련된 법령준수 및 거래건전성을 위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두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보험회사⁸⁾의 내부회계관리에 관해서는 외부감사법이 내부회계관리제도

4)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관리, 즉, 금융회사가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광의의 내부통제 개념과 구분하여 협의의 위험관리라고도 함(박세화 2016, p. 43)

5) 한기정(2019), p. 222; 김종범(2018), p. 177; 박세화(2016), p. 43

6) 2000년 1월 21일 법률 제6175호로 개정되어 2000년 4월 22일 시행된 보험업법을 말함

7) 2015년 7월 31일 법률 제13453호로 제정되어 2016년 8월 1일 시행됨

8)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 연도 또는 다음 사업 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직전 사업 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 등)를 말함(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

의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전자금융거래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내지 정보보호를 총괄하여 책임질 담당자와 내부통제체계 마련에 대해 규율한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함)은 금융회사에게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등 의무를 부과한다.

그 밖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보험회사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매우 다양하다.

이하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부통제 관련 규제 법률 중에서 검토필요성을 중심으로 (i)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ii) 보험업법, (iii) 금융소비자보호법, (iv) 특정금융정보법, (v) 개인정보 보호법, (vi) 신용정보법, (vii)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가. 개요

금융회사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에도 위험관리에 전문성이 없는 감사위원회나 준법감시인이 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제도와 별도로 위험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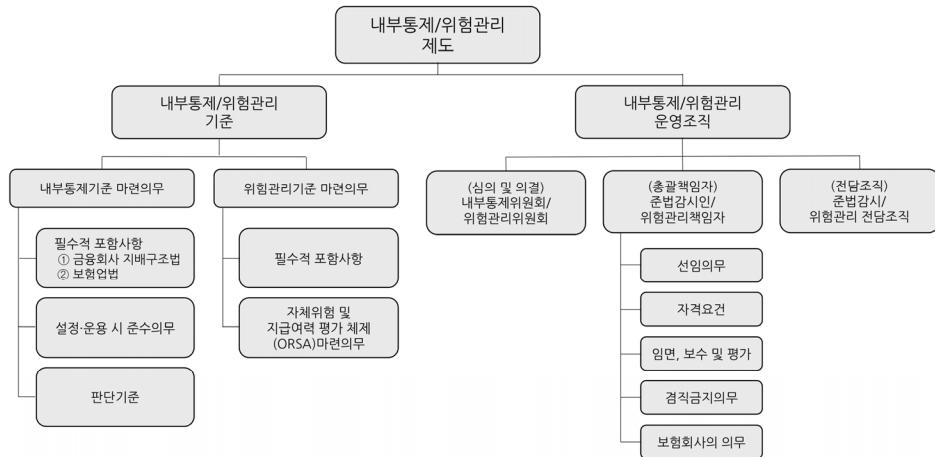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크게 (i) 내부통제기준 내지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와 (ii) 내부통제기준 내지 위험관리기준의 운영조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조직에는 ① 심의·의결 기관인 내부통제위원회 내지 위험관리위원회, ② 총괄책임자인 준법감시인 내지 위험관리책임자, ③ 준법감시 내지 위험관리 전담조직 등이 속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수범자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인바,⁹⁾ 이하에서는 보험회

9) 은행,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을 말함(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 제1호, 영 제2조)

사에 대해 적용되는 내부통제제도 및 위험관리제도 관련 규제에 관해 아래와 같은 목차로 서술한다.

〈그림 II-1〉 내부통제/위험관리제도 세부목차



나. 내부통제제도

1) 내부통제기준

가)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의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¹⁰⁾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24조 제1항). 내부통제기준이란 (i) 법령을 준수하고, (ii)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iii)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제5호).

10)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 소정의 금융회사에 해당됨

개정 전 보험업법¹¹⁾이 내부통제의 목적을 법령의 준수, 자산운용의 건전성, 보험계약자의 보호로 설정¹²⁾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자산운용의 건전성에서 경영 전반의 건전성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호에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보호로 그 범위가 보다 넓어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법 제24조 제2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내부통제기준의 필수적 포함사항

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내부통제기준에는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영 제19조 제1항).

〈표 II-1〉 내부통제기준 필수포함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동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별표3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포함)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
- 1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7월 31일 개정(법률 제13453호)되기 전의 보험업법을 말함. 이하에서 동일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기 전의 보험업법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도 각 「개정 전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전 보험업감독규정」이라 함
- 12) 개정 전 보험업법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표 II-1〉 계속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동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별표3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
1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 제4항 제4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2.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동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각호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다음의 사항
 - 가.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
 - 1)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 2)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 3)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 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다.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 라.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 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 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 2)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 체계의 마련 및 운영
 - 3)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
 - 바.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집종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다음의 보험계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1) 상품개발 관련 업무
 - 2) 최적기초율 산출 관련 업무
 - 3) 계약자 배당 관련 업무
 - 4) 실제사업비 배분 관련 업무
 -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계리업무
 - 아. 보험금 지급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자. 보험사기행위 예방 및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약 심사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 차. 대출금리의 산정 및 운용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위 표에서 12.바.~차.는 보험회사에만 해당되는 필수포함사항이다.

보험회사 외의 금융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으로 등록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예컨대, 은행이나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해당 금융회사 유형에 따른 필수포함사항에 더해 (i)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ii) 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iii)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iv) 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v)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을 필수포함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와 관련해서는 ‘실효성’이란 문구가 단순한 목표 설정 문구인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요건인지 여부에 관해 찬반론이 존재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효성’이란 문구는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필수포함사항에 규정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표 II-2〉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조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문구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요건이라고 보는 측에서는 해당 문구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과정에서 특별히 추가되었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므로 ‘실효성’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그러한 해석에 반대하는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실효성 있게’ 마련한 것인지 구체적 의미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가 발생한 후에 실효성 유무를 판단하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등 수

법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침의적 행정행위 근거법 규의 명확성원칙·엄격해석원칙에 따라 ‘실효성’을 법령상 요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판단기준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② 보험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업법령에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관련 사항은 대부분 삭제되었지만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일부 사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규정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I-3〉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회사 내부통제 관련 사항

보험업감독규정상 내부통제 관련 사항

1. 보험회사가 자본시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것(제5-14조 제1항 제2호)
 -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정·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나.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다.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 라. 보험회사가 직접 유가증권등에 운용하는 자산과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자산간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대출감사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용할 것(제7-3조 제3항)
3.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제7-12조의2 제3항)
4.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그 보험회사에게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교환·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 하는 경우 자산의 무상양도등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것(제7-13조의2 제1항 제3호)
5. 통계요율이 아닌 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별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요율의 산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제7-79조의3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5-14조 제1항 제2호는 명시적으로 해당 사항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데는 의문이 없어 보인다.

그에 반해 그 밖의 조문에서 규정하는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용의무, 내부통제기준 운영 내지 마련의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의 내부통제기준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들은 위반하더라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경영 건전성 내지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의 보호라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의 내부통제 목적을 중시하는 견해에서는 보험업감독규정 해당 조문에 명시적 언급이 없더라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위임규정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보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성립된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반면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5-14조 제1항 제2호는 개정 전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의 필수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조문들은 그렇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다른 조문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19조 제1항 제13호가 아니라 관련 보험업법 규정¹³⁾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각건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사항이라 하더라도 소관 법률에 따라 위반에 대한 제재가 다를 수 있으므로, 후자의 해석이 침익적 행정행위 근거법률의 엄격해석원칙¹⁴⁾에 보다 부합한다고 사료된다.

다)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용 시 준수의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13) 예컨대, 보험업감독규정 제7-3호 제3항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용의무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관련 세부기준 위임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임

14)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등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에 해당하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I-4〉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2

1.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통제 업무를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것
2.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할 것
3.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할 것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보험회사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을 것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될 것
6. 내부통제기준은 보험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될 것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동시행령,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함
8.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
9.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
10.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11.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12.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의 고충사항 및 지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할 것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동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전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킬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정이고, 후자는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하는 규정이다.

전자의 경우로 본다면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 역시 내부통제기준의 필수포함사

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후자와 차이가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판단기준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해서는 (i)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ii) 영 제19조 제1항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여부가 다투어졌던 두 사건¹⁵⁾에서 심리를 맡은 법원은 시행령에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내부통제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입법자의 의도이므로, 목적으로 해석을 통해 개별 법정사항의 ‘핵심적 주요부분’ 내지 ‘핵심적 내부통제기능’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법정사항의 실질적 흠결 여부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위 (ii) 쟁점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론의 입장을 택하였다.¹⁶⁾

그러나 이후 법리 전개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두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서로 상이했다.

2021년 판결은 제재처분 근거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은 법정사항을 추가 규정한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설정·운영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내부통제규범을 두는 목적을 가능한 살리되 객관적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해

15) 2019년경 독일 국채금리연계 DLF의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하여 DLF를 판매한 두 은행의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등으로 받은 중징계 처분에 대해 각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함

16)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및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 3. 14. 선고 2020구합65654 판결

석'을 중시하여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법정사항이 일단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운영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세부적·실무적 사항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법정사항을 흡결하였다고 만연히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상품선정절차 생략기준 미비 등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대부분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반면 2022년 판결은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규범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을 중시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시스템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원칙으로서 내부통제기준의 필수포함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은행이 내부통제기준에 투자성향등급 임의 상향을 금지 하더라도 설정·운용기준에 따라 '직접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지 않으면 이를 막지 못하는바,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써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는 등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내용을 매우 넓게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두 판결의 해석이 엇갈림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두 사건 상급심의 결론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처럼 결과지향적인 표현을 요건으로 삼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모든 경우를 가정하여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나 행정당국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며, 내부통제의 실효성은 내부통제기준을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보다 크게 영향을 받는다. 내부통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 각 기관 내지 구성원에게 운영 내지 관리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통해 사실상 내부통제기준 운영 미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법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금융시장에서는 규제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감독기관은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법집행으로 수범자에게 법규의 내용과 법집행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¹⁷⁾

17) 같은 취지로 김홍기·문은경(2021), p. 89를 참조 바람

2)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조직

가) 내부통제위원회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¹⁸⁾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영 제6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2항).

이사회 내 위원회로 규정된 위험관리위원회와 달리 최고경영자 산하 경영조직의 일부로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그 외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임원으로 구성되는데(감독규정 제11조 제7항 제2호), 이는 경영진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을 부여하여 주도적으로 내부통제 주체 간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¹⁹⁾

내부통제위원회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결과를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수행하는 역할은 아래와 같다(감독규정 제11조 제7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표 II-5〉 보험회사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7항 제3호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해서는 설치근거 규정의 위치와 법률적 위상에 관해 논의가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는 설치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 태도는 법률에서 위험관리위원회를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 규정한 것과 대비된다.

18)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하나(영 제13조 제1항 제4호) 현실적으로 집행임원 제도를 채택하는 회사가 거의 없으므로 실질적 의미는 없다고 보임(김병연 2016, p. 21)

1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8. 29),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p. 9

위험관리 역시 넓은 의미에서 내부통제에 속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분²⁰⁾하고 있는 것이므로, 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해서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²¹⁾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내부통제체계 운영에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있으나,²²⁾ 금융회사 내부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최소한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의무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내부통제위원회 역시 상법상 위원회로 설치하거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내부통제 역할을 모두 수행하도록 하자는 견해도 제시된다.²³⁾

그러나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므로(법 제12조 제2항 본문), 내부통제제도의 취지, 즉 경영진의 활동과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시에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내부통제위원회를 최고경영자 산하에 두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내부통제 주체들 간의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여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던 점을 고려하면 내부통제위원회의 위상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직 이른 논의로 보인다.²⁴⁾

나) 준법감시인

①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법 제25조 제1항). 준법감시인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법 제25조 제1항).

20) 한기정(2019), p. 222

21) 같은 취지로 김병연(2016), p. 21을 참조 바람

22) 김종범(2018), p. 193

23) 김종범(2018), p. 193

24) 같은 취지로 김병연(2016), p. 31을 참조 바람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라 할 수 있으며,²⁵⁾ 준법감시인의 업무는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로서 사전적 규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주에 의한 외부적 업무감시로서 사후적 규율의 성격이 강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²⁶⁾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으나(법 제25조 제1항), 반드시 보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²⁷⁾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도 없다.

②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소극적 요건 및 적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소극적 요건을 두는 이유는 준법감시인의 사회경제적 신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적극적 요건을 둔 것은 준법감시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²⁸⁾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소극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표 II-6〉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소극적 요건(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적극적 요건(법 제26조 제1항 제2호)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약, 다음 중 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5) 김종범(2018), p. 181

26) 한기정(2019), p. 228; 금융위원회(2016), p. 69

27)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60901호)

28) 한기정(2019), pp. 228~229

〈표 II-6〉 계속

소극적 요건(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적극적 요건(법 제26조 제1항 제2호)
	<p>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함)</p> <p>마.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영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다음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계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다음 각목의 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국은행연합회 나) 한국금융투자협회 다) 생명보험협회 라) 손해보험협회 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감독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아래 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거래소 (2) 한국예탁결제원

개정 전 보험업법에서는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을 소극적 요건으로 하였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를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는 과거 방식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이 경미한 재해로 신분을 잃게 되어 내부통제가 내부통제에 전문성이 있는 자보다 단순히 흡이 없는 자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였다.²⁹⁾ 특히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인,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겸직 업무와 관련하여 경미

2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8. 29), “금융사고 극복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p. 8

한 제재를 받는 것만으로도 면직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³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소극적 요건을 완화한 것은 준법감시인의 신분상 불안을 덜어 내부통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 평가된다.

③ 준법감시인의 임면, 보수 및 평가

보험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³¹⁾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법 제25조 제2항 본문). 준법감시인을 원칙적으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것은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³²⁾

다만,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주권상장법인인 경우는 2조 원 미만)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2항 단서, 영 제20조 제2항 제3호). 다만, 이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법 제25조 제5항).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임명하므로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가 여기 해당되는지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대내적으로 직원 신분이라도 대외적으로 임원급으로 인식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임원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임에 관해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³³⁾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³⁴⁾

3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8. 29), “금융사고 근절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p. 8

31)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함(법 제2조 제5호)

32) 최문희(2020b), 단락 1

33) 법 제7조 제2항의 임원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 공시 및 보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됨

34)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70445호)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법 제25조 제4항), 임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25조 제3항).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법 제25조 제3항 팔호).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법 제25조 제3항). 반대해석상 선임의 경우는 통상의 이사회 결의 요건에 의하면 된다고 본다.³⁵⁾ 또한,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법 제25조 제6항).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보장하고, 준법감시인을 해임하는 경우 가중된 의결요건을 적용하며, 준법감시인의 보수와 평가를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두 준법감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준법감시인의 임기가 보장되고 해임하는 경우 가중된 의결요건이 적용되기는 하나 해임 사유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금융감독당국은 해임의 사유는 상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 사유는 준법감시인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³⁶⁾

④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내부통제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는 담당할 수 없다(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9조).

35) 최문희(2020b), 단락 5

36)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60773호)

〈표 II-7〉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9조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로서 영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다음의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가.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 나.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 다. 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 라.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 마.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
 -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 사. 재보험에 관한 업무
 - 아.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영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업무{단,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주권상장법인은 2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 원 미만인 국내지점은 겸직 가능}
 - 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는 위 규정에 따라 (i) 자산운용 관련 업무,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 (ii)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가 있으며, 그 밖에 법 제29조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라도 (iii) 다른 법령에서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i) 준법감시인은 법령준수와 건전한 자산운용을 감시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그러한 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자산운용 관련 업무,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겸영 업무에 관한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대해석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후선업무(Back office 업무)는 겸직이 가능하다.³⁷⁾

겸직이 금지되는 업무가 열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떠한 업무가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겸직제한 업무 여부는 업무의 명칭이 아닌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³⁸⁾

37) 금융위원회(2016), p. 76

38)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60775호)

다음은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및 금융감독당국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8〉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관련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사례 정리

구분	내용
제17037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법감시인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본연의 업무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허용됨
제17046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신 및 투자결정 과정에서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심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됨 다만 본질적 업무 수행과 관련한 최종적(단독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본연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므로 불가함
제18008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법감시인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업대출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신심사나 자산운용 등의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됨
제19003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TCA/CRS(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를 수집·점검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Back office 업무의 일종)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업무는 내부통제 성격을 지닌 업무로서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가능함 다만, 준법감시인이 FATCA/CRS 업무의 실제 운영(자료 실사 및 수집 등)까지 수행할 경우, 점검업무를 소홀히 수행하게 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운영업무는 불가능함

위 사례를 보면 금융감독당국은 여신 내지 투자 결정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나, 최종적·단독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본연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신 내지 투자 결정은 준법 감시 업무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자산운용 업무로서 준법감시인의 겸직이 금지되지만, 준법감시인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겸직은 허용하는 것이 내부통제 본연의 업무 수행에 효율적이다.³⁹⁾ 금융감독당국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FATCA/CRS 업무 관련 해석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후선 업무의 일종이라고 보

39) 같은 취지로 임정하(2016), p. 161을 참조 바람

면서도 수집된 자료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업무와 실제 운영(자료 실사 및 수집)을 나누어 후자의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법 제29조의 겸직금지 업무들은 제한적 열거라 할 것인데, 열거된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후선업무에 관해서도 점검 업무는 가능하되 실제 운영 업무는 불가하다고 보는 것은 일견 문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 보인다. 직무전념 소홀 우려로 금융회사의 기본질적 업무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 나아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정 전 보험업법 등 금융관계법령에서는 위험관리 역시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였으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준법감시인과 별도로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였다. 이는 법령준수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과 역할을 나누어 재무전문가 등 위험관리에 전문적 소양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재무적 위험을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 위한 것이다.⁴⁰⁾

그러나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주관상장법인은 2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나 외국보험회사의 자산총액이 7천억 원 미만인 국내지점(이하, “소규모 금융회사”라 함)은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한데, 회사 규모가 작으면 준법감시 내지 위험관리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고 인력규모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준법감시 업무와 위험관리 업무는 서로 성격이 상이하므로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겸직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⁴¹⁾ 그러나 소규모 금융회사는 인력규모가 크지 않아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분리 선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준법감시와 위험관리는 넓은 의미의 내부통제의 일환이라는 점 및 겸직을 위해서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소규모 금융회사에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 사료된다.

(iii)의 경우에 관해서는 III. 3.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0) 박세화(2016), p. 60

41) 김병연(2016), pp. 29~30

⑤ 준법감시인에 대한 의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준법감시인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표 II-9〉 준법감시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0조

1.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 가.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 나.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3. 회사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주: 1)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법 제30조 제2항, 동시행령 제25조 제1항), 임면사실 보고 접수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음(영 제30조 제1항 제5호)

다) 내부통제 전담조직

보험회사는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영 제19조 제3항). 보험회사는 내부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11조 제3항 본문).⁴²⁾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감독규정 제11조 제3항 단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바,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전담조직이 필요하

42)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에도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영 제19조 제1항 제4호),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에도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배분'하도록 규정(감독규정 별표 2. 3.)하는 등 지원인력과 조직의 원비를 강조하고 있음

다.⁴³⁾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은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라는 의미로, 전담 직원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원의 다소 여하는 불문하고 일단 독립된 전담부서가 갖추어져야 한다.⁴⁴⁾

이와 관련하여 (i) 일선 영업부서와 독립된 전담부서를 두어야 하는 데는 의문이 없으나, 내부통제, 위험관리, 감사 등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ii) 전담부서의 직원이 다른 일선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

(i)과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 간,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감사 담당부서 간의 통합 운영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의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라면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⁴⁵⁾

반면,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감사 담당부서는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⁴⁶⁾ 준법감시 부서는 최고경영자의 관리감독을 받아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지만, 감사업무는 최고경영자를 견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하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⁷⁾

금융감독당국은 ‘내부통제 전담조직’의 주된 의미를 ‘일선 영업부서로부터의’ 독립성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가 분리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회사 규모가 작거나 인력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등에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감독당국의 해석에 대해,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라는 규정의 문리에 반하고, 인력 사정 등과 같은 모호한 기준으로 통합운영의 가능 여부를 정하는 것

4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입법과정에서 준법감시 지원인력이 평균적으로 감사인력의 1/3 수준에 머무는 등 열악한 여건이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통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바 있음(안수현 2015, p. 79)

44) 금융위원회(2016), p. 91

45) 금융위원회(2016), p. 91

46)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80427호)

47)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80427호)

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⁴⁸⁾

생각건대 보험회사별로 준법감시 내지 위험관리 업무의 부담 정도와 인력 사정이 다르며 소규모 보험회사 내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⁴⁹⁾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경우에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분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해석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양 조직을 분리 운영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지고,⁵⁰⁾ 보험회사들이 구체적 기준없이 양 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구분하여 규제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의 의미에 관해 법령에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준법감시인의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의 경우와 유사하게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법령에 구체적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i)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전담부서 직원이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겸직하지 않는 것이 직무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답한 바 있다.⁵¹⁾ 이를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할 여지도 있다.

내부통제 전담조직을 두도록 한 이유가 독립성 확보에 있다면 최소한 그 조직의 직원들이 비록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의 의미를 구체화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허용되는 경우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8) 한기정(2019), p. 227

49)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주권상장법인은 2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 원 미만인 국내지점을 말함

50) 자산총액 1,000억 원 규모의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조직 분리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점의 규모나 인력 사정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양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로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음[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80440호)]

51)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80440호)

라) 대표이사 및 지점장

(i) 보험회사의 지점장(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함)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함)에게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본문).

다만, 해당 지점장이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관장하는 관리조직의 장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단서 전단),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일 뿐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감독규정은 지점장의 신분이 내부 임직원인 경우와 외부인인 경우를 가리지 않으므로 지점장이 보험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설계사인 경우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여 감독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성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⁵²⁾

(ii)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단서 후단).

보험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본문). 다만,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단서).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업무에 관해 최종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식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그러한 관점에서 대표이사를 내부통제위원회의 장으로 하고 내부통제 체계·운영 실태 점검 및 이사회 보고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이사가 자신의 내부통제 업무를 사실상 준법감시인에게 모두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위임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⁵³⁾

52)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60960호)

53) 임정하(2016), p. 171

다. 위험관리

1) 위험관리기준

가) 위험관리기준의 마련의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는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1항). 위험관리기준이란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법 제27조 제1항).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제5호).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법 제27조 제2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별도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위험관리기준의 필수적 포함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기준에는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영 제19조 제1항).

〈표 II-10〉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기준 필수포함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동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2.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3.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5.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6.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7.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8.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9.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10.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동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다음의 사항

〈표 II-10〉 계속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동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 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 나.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 다.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의 설정·운영
- 라.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의 평가
- 마.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 바.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 사.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유지
- 아.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수준

다)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 마련의무 및 준수사항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에서도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한 절(제1절)에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기준에 대해 규정(제3관)하고 있다.

개정 전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위험관리체제⁵⁴⁾의 마련 및 위험관리조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개정 전 보험업감독규정상 ‘위험관리체제’ 마련의무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⁵⁵⁾ 마련의무로 개편되었고, 근거규정도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7조’로 변경되었다. 즉, 보험회사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위임 규정에 의하여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체제(이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라 함)를 갖추어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제1항).

보험회사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보험업감

54)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체제를 말함

55)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ORSA)라고도 함

독업무 시행세칙 제5-6조의2 제1항).

〈표 II-11〉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 필수포함사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6조의2 제1항

1.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
2. 현재 직면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수 있는 중요한 리스크를 모두 식별·평가할 것
3. 장래 사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자급여력 수준을 평가할 것
4. 회사의 리스크 특성·규모·복잡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요리스크(최소 1개 이상)에 대해 내부모형을 활용하고, 통합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모형 구축 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것
5. 평가결과를 한도설정, 자본계획, 성과평가, 배당결정 등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에 활용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내부모형 활용 등이 미흡할 경우,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 구축을 유예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5-6조의2 제2항 및 제3항).

또한, 보험회사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II-12〉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1.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할 것
2. 위 1.에 의한 위험 측정결과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기준액 산출 등 경영목표 수립에 적절히 반영할 것
3.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용할 것
4. 주요 위험의 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할 것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액 산출에 관한 세부자료를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제5항).

2) 위험관리조직

가) 위험관리위원회

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상장회사인 경우는 2조 원 이상)는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3조 제3호, 제16조 제1항 제3호). 설치의무가 없는 보험회사라 하더라도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며(법 제16조 제3항),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법 제16조 제4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법 제21조, 감독규정 제8조).

〈표 II-13〉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1조, 감독규정 제8조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보험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법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감독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
 - 가.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나.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라. 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위기상황 분석을 말함)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단,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반기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
 - 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 지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함)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자 산하 경영조직의 일부로 규정된 내부통제위원회와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로 위험관리위원회를 필수기관으로 설치하였다. 이는 금융회

사의 위험관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험 관리에 관한 이사회와의 권한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으며, 위원회 대표를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것은 최고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인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된다.⁵⁶⁾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i)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이사의 자격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고, (ii)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 간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이 있다.

먼저 (i)의 비판은,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하에서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이사의 자격에 관해 위험관리나 재무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관이 위험관리를 담당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⁵⁷⁾

생각건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내부통제제도와 위험관리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위험관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전부는 아니라 도 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 재무전문가 등 위험관리에 전문적 소양이 있는 자가 일정 비율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i)의 비판은,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의 관계, 의사소통 방법 및 책임 소재 등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문제라고 본다.⁵⁸⁾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관하여 서로 밀접하게 소통하며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나 현행 규정상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이므로 사내이사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⁵⁹⁾ 그럼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달리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 관리책임자 간의 관계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이는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서 궁극적 책임은 위험관리위원회, 즉 이사회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위험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위험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보고사항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⁶⁰⁾

56) 임정하(2016), p. 154

57) 박영준(2015), p. 186

58) 임정하(2016), p. 154

59) 임정하(2016), p. 154

60) 임정하(2016), pp. 154~155; 정영철(2016), p. 188

타당한 비판이라 생각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규정 체계를 보면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를 집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⁶¹⁾ 또한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책임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이와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임원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외이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료제공의무 내지 금융회사에 대한 사외이사의 자료제공요청권(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과 비교해 보더라도 일견 규정 내용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책임자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둔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책임자 간에 보다 적극적인 정보 및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법 시행 이후 금융회사 내부 위험관리체계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한편, 위험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이루는바,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 실무를 담당하는 하부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투자리스크와 관련된 세부적 의결사항을 미등기 임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1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위임의 일반 법리에 따라 위험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법 제21조 각호에 속하는 사항 중 일부를 하부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⁶²⁾

예컨대, ‘관련 규정상 투자대상 적격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가증권에 대한 예외적 투자 승인’이나 ‘손절매 유예 여부의 결정’은 법상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① 위험관리의 기본 방침 및 전략 수립 및 ②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과 관련된 업무이므로 위험관리위원회가 그 권한을 하부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반면, 위험관리위원회가 자체 운영규정 등을 통해 하부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범위를 설정하여 ‘개별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적격 여부의 판단’ 및 ‘개별 손절매 건에 대한 손절매 유예 여부 결정’ 권한을 하부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⁶³⁾

61) 한기정(2019), p. 211

62)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70506호)

63)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70506호)

타당한 해석이며, 이처럼 위험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하부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명확히 기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보험업법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조직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7조를 위임근거 조항으로 명시한 자체 위험 및 자금여력 평가 체제 마련의무(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제1항)와 달리 위험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은 위임 근거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바, 보험업법상 재무건전성 기준(영 제65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제외)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 제1항 본문). 다만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감독규정 제7-6조 제1항 본문).

〈표 II-14〉 보험업상 이사회 내지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 제1항

1.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위험관리기본방침의 수립
2. 보험회사가 부담가능한 위험(공시이율 등) 수준의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4. 위험관리세부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 결과(이 경우 해외의 영업현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위기상황분석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
7. 감독규정 제7-12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 등 재보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 및 변경

〈표 II-14〉의 심의·의결사항은 재보험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모두 포함된다. 그러므로 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자산총액 5조 원 미만의 보험회사(상장기업의 경우 2조 원 미만)에게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 보험회사가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위험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1조의 위험관리위원회와 동일한 요건(사외이사의 과반수 이상 포함, 위원회의 대표가 사외이사 등)을 갖추어야 하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가 법으로 강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구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⁶⁴⁾ 그러나, 위험관리위원회 설치가 면제되는 소규모 금융회사의 이사회가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결정권한을 자율적으로 설치한 위험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와 같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상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갖추어 위험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해석한다.⁶⁵⁾

나) 위험관리책임자

①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의무

보험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 위험관리책임자란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다(법 제28조 제1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내지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위험관리 전담조직이 지원해야 하는 위험관리자의 직무수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II-15〉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3항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임원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4.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64) 금융위원회(2016), p. 41

65)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60936호)

한편, 보험업감독규정은 최근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보험회사에 대해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감독규정 제7-6 제2항, 감독업무시행 세칙 제5-3조).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는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소극적 요건 및 적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소극적 요건을 두는 이유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사회경제적 신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적극적 요건을 둔 것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⁶⁶⁾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소극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표 II-16〉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소극적 요건(법 제28조 제3항 제1호)	적극적 요건(법 제28조 제3항 제2호)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6) 한기정(2019), pp. 235-236

〈표 II-16〉 계속

소극적 요건(법 제28조 제3항 제1호)	적극적 요건(법 제28조 제3항 제2호)
	<p>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영 제2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목의 기관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국은행연합회 2)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생명보험협회 4) 손해보험협회 5)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협회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아래 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한국거래소 나) 한국예탁결제원

③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보수 및 평가

보험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법 제28조 제2항, 제25조 제2항 본문). 위험관리책임자를 원칙적으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한 것은 준법감시인의 경우와 같이 위험관리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주권상장법인인 경우는 2조 원 미만)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2항, 제25조 제2항 단서, 영 제20조 제2항 제3호). 다만, 이 경우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법 제28조 제2항, 법 제25조 제5항). 준법감시인과 같이 위험관리책임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⁶⁷⁾

사내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임명하므로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

67) 최문희(2020c), 단락 3

하고자 하는 자가 여기 해당되는지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당국은 대내적으로 직원 신분이라도 대외적으로 임원급으로 인식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업무집행책임자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이 임원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선임에 관해 금융위원회 보고 및 공시⁶⁸⁾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⁶⁹⁾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며(법 제28조 제2항, 제25조 제4항), 임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법 제28조 제2항, 제25조 제3항).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법 제28조 제2항, 제25조 제3항 팔호).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법 제28조 제2항, 제25조 제3항). 반대해석상 선임의 경우는 통상의 이사회 결의요건에 의하면 된다고 본다.⁷⁰⁾ 또한,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2항, 제25조 제6항).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에 관한 규정(법 제25조 제2항부터 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여 동일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바, 위험관리책임자의 지위와 업무의 독립성을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¹⁾

따라서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관련된 쟁점들, 예컨대 준법감시인의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논의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④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내부통제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는 담당할 수 없다(법 제29조).

68) 법 제7조 제2항의 임원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 공시 및 보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됨

69)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제170445호)

70) 최문희(2020b), 단락 5

71) 최문희(2020c), 단락 1

〈표 II-17〉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업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9조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로서 영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다음의 업무 및 그 부수업무
 - 가.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
 - 나.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위험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경우는 예외로 함)
 - 다. 모집 및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 라. 보험계약 인수에 관한 업무
 - 마. 보험계약 관리에 관한 업무
 - 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업무
 - 사. 재보험에 관한 업무
 - 아. 그 밖에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관리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영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업무{단,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주권상장법인은 2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 원 미만인 국내지점은 겸직 가능}
 - 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는 위 규정에 따라 (i) 자산운용 관련 업무,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 (ii)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가 있으며, 그 밖에 법 제29조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라도 (iii) 다른 법령에서 겸직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i) 자산운용 관련 업무,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겸영 업무, 준법감시업무는 모두 위험관리 업무와 이해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금지된다.

다만,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 중에서도 보험계리와 같이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 즉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점검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경우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수 있다.⁷²⁾

예를 들어,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나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지만,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부서를 직접 관장하거나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최종적인 집행권한 내지 최종적·단독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위험관리 업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⁷³⁾

72) 금융위원회(2016), p. 77

73) 금융위원회(2016), p. 77

열거된 겸직금지 업무 이외에 인사, 총무, 법무 등의 업무는 준법감시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하다.

다음은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업무 해당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법령해석을 정리한 것이다.

〈표 II-18〉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 관련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사례 정리

구분	내용
제16065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9조는) 겸직제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성·책임성을 풀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기획, 인사, 총무 등의 업무는 지배구조법 제29조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에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 가능한 업무로 봄이 타당함
제16077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제한 업무 여부는 업무의 명칭이 아닌 업무의 성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질의 대상인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가 겸직이 허용되는 보험계리 업무의 정의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이거나, 그 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업무라면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할 수 있음그러나 보험수리 업무가 보험상품 개발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관할할 수 없음
제16078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위험관리책임자가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심사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심의, 의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ii) 위험관리책임자와 준법감시인 간의 겸직에 관해서는 앞서 준법감시인의 겸직 부분에서 이미 논하였고, (iii)의 경우에 관해서는 III. 3.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⑤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위험관리책임자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표 II-19〉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0조

1.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함⁷⁴⁾
 - 가.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 나.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3. 회사 및 그 임직원은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다) 위험관리 전담조직

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보험회사는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영 제22조 제2항). 보험회사는 위험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다음 표와 같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13조 제3항 본문).⁷⁵⁾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본인만으로 위험관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감독규정 제13조 제3항 단서).

74)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법 제30조 제2항, 동시행령 제25조 제1항), 임면사실 보고 접수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음(영 제30조 제1항 제5호)

75)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에도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영 제19조 제1항 제4호),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에도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배분'하도록 규정(감독규정 별표 2. 3.)하는 등 지원인력과 조직의 완비를 강조하고 있음

〈표 II-20〉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 제3항

5.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7.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임원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8.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위험관리책임자의 지위와 독립성을 준법감시인과 동등하게 보고 있으므로 내부통제전담조직을 둔 것과 같은 이유로 위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두도록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은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라는 의미로, 전담 직원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원의 다소 여하는 불문하고 일단 독립된 전담부서가 갖추어져야 한다.⁷⁶⁾

이와 관련하여 (i) 일선 영업부서와 독립된 전담부서를 두어야 하는 데는 의문이 없으나, 내부통제, 위험관리, 감사 등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ii) 전담부서의 직원이 다른 일선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내부통제전담조직 부분에서 논한 바 있다.

② 보험업법

최근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실무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위험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위험관리책임자와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감독규정 제7-6조 제2항, 감독업무시행세칙 제5-3조).

전담조직은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감독규정 제7-6조 제3항).

76) 금융위원회(2016), p. 91

〈표 II-21〉 보험업감독규정상 위험관리 전담조직의 업무

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 제3항

1. 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이사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영업부서 및 자산운용부서가 위험관리지표를 직접 산출하고 모니터링 및 초과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위험관리 전담조직은 이를 보고받아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6조 제3항은 수익성을 우선 추구하는 현업부서가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위험관리 조직을 두도록 한 것이므로 영업부서 또는 자산운용부서에서 1차적으로 위험한도의 운용상황 점검 및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한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라. 위반 시 제재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다.

〈표 II-22〉 내부통제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법 제43조 제1항(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제2항(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4.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5.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 내지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 자6. 예외적으로 준법감시인을 직원 중에 선임하는 경우로서 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한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법 제25조 제6항(제2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겸직이 금지되는 업무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한 자3. 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표 II-22〉 계속

법 제43조 제1항(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제2항(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7.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8.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자	

이상에서 보면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 미마련,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시 의결절차 미준수 등 대체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관련 위반에 대해 동등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요건인 데 반해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관해 준법감시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에 대해 준법감시인에 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또한, 아래 표에 열거된 경우에는 보험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도 부과될 수 있다 (법 제34조 및 제35조).

〈표 II-23〉 제재조치 대상 내부통제 관련 위반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30조
1.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2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제2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임면 및 보수지급과 평가기준 운영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 제26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
5.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위험관리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7. 법 제2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8.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같은 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거나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
9. 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
10. 법 제3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11. 법 제30조 제4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3. 보험업법

가. 개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업법령에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규정은 대부분 삭제되었지만 (i)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관련된 일부 사항 및 (ii)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대상이 아닌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의무 관련 사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해의 편의상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련 사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았으므로 이하에서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영업기준(보험업법 제87조 제4항) 중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대해 서술한다.

나. 업무지침

직전 분기 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 중 금융기관보험 대리점 등이 아닌 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함)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여야 한다(영 제33조의2 제1항 제1호). 업무지침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해당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지침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영 제33조의2 제1항, 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 별표 5의6. 1.).

〈표 II-24〉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지침 필수포함사항

보험업법 감독규정 별표 5의6.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5.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처리
6.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7. 업무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8.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및 업무상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

〈표 II-24〉 계속

보험업법 감독규정 별표 5의6.

9.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10.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11.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12.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13.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처리
14.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
15. 업무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16.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및 업무상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
17.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
18.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9.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 다. 보험대리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0.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및 자율 협약에 대한 사항
21.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2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3 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다음의 사항
 - 가. 제휴보험회사의 선정·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나. 판매대상 보험상품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다.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제휴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민원 및 분쟁 처리절차와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
 - 라. 보험회사와의 제휴계약이 종료될 경우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 마. 보험상품판매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23. 소속 보험설계사 위촉·관리에 관한 다음 각 세목의 사항
 - 가. 보험설계사 위촉기준
 - 나. 보험업법 제85조의2에 따른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업무 수행 제한 등 불이익 부과

다. 운영조직

1) 준법감시인

가)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업무지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임원 또는 직원, 즉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영 제33조의2 제1항 제2호, 감독규정

감독규정 제4-11조 제1항, 별표 5의6. 2.).

나)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에서 정하는 다음의 소극적 요건 및 적극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표 II-25〉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소극적 요건(감독규정 별표 5의6. 2. 나. 및 다.)	적극적 요건(감독규정 별표 5의6. 2. 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일 것2. 최근 5년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이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3.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다) 준법감시인의 점검 및 보고의무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와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이사회 및 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감독규정 별표 5의6. 7. 다.).

라) 준법감시인에 대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준수의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이다(감독규정 별표 5의6. 2. 바.).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경우와 유사하게 준법감시인에 대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표 II-26〉 준법감시인에 대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의무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의6.

1.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모집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내부통제 이외의 업무로부터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에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따르도록 할 것
3. 준법감시인에게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이유로 인사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4.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9-2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통보할 것

2) 내부통제위원회 및 지점장

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감독규정 별표 5의6. 7. 가.).

지점장(보험영업 관리자 포함)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준법감시인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감독규정 별표 5의6. 7. 나.).

3) 준법감시 지원조직

직전 분기 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소속 보험설계사의 인원에 비례하도록 할 것)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감독규정 별표 5의6. 2. 마.).

라. 위반 시 제재

과태료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136조 제1항, 제134조).

4. 금융소비자보호법

가. 개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⁷⁷⁾에게 임직원 및 업무를 위탁한 판매대리·증개업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관리할 책임을 부여⁷⁸⁾하고, 일정 범위의 법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러한 ‘관리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증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증개업자(「보험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보험 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증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함)도 정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제3항 및 제4항).

법에는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사항이나 운영조직 등에 관해 별도의 언급이 없으며, 모두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다.

77)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증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를 포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고 칭하는데, 직접판매업자는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판매대리·증개업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증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자문업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자인바, 보험회사는 직접판매업자, 보험설계사, 대리점, 증개사는 판매대리·증개업자에 각 해당됨

78) 보험회사는 임직원 및 업무를 위탁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대출모집인 등 판매대리·증개업자에 대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데, 보험중개사의 경우는 보험회사와 업무위탁 관계없이 독립적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리책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내지 비전속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달리 제외 규정이 없어 일정 보험회사의 관리책임 대상에 포함됨(양승현 2021, pp. 20~21)

이하에서는 보험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운영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등에 적용되는 내용도 관련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나. 내부통제기준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마련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을 포함한 법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항에서 규정한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직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라 함)를 정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2항).

예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내지 개인 보험대리점이 5명 이상인 비전속 법인 보험대리점(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및 소속 보험설계사 내지 개인 보험중개사가 5명 이상인 법인 보험중개사(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인 경우)는 모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담한다(영 제10조 제1항 제5호 다목,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⁷⁹⁾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영 제10조 제3항 본문). 다만, (i)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79)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9조 ① 영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
 -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 2)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명 미만(직전 분기의 일평균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시근로자가 3명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하는 사항, (ii)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iii)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영 제10조 제3항 단서).

기준을 제정·변경한 경우에는 제정·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영 제10조 제4항, 감독규정 제9조 제4항).

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필수적 포함사항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등의 내부통제기준에는 아래 표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영 제10조 제2항).

〈표 II-27〉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필수포함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동감독규정 제9조 제2항, 별표 2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 가.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의 사항
 - 1) 민원 또는 금융소비자 의견 등의 반영
 - 2)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 나.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 다.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라.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 마.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금융상품등에 관한 업무 위탁 및 관련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¹⁾
 - 1) 조정·의결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
 -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 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 다) 금융상품의 개발,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 라)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 마)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결과
 - 바)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감독(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법 제50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사)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 3) 대표자,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 및 사내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함)으로 구성할 것

〈표 II-27〉 계속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동감독규정 제9조 제2항, 별표 2

- 4) 대표자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할 것
- 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종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
 -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 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 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 라)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 마)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 바)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 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가)부터 마)까지의 사항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보고 업무 포함)
 - 2) 대표자 직속으로 설치할 것
 -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 다. 금융소비자보호 종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²⁾ 및 직원의 임명·자격요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 라. 대표이사, 이사 등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자의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마.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관한 금융소비자 종괄기관과 그 외 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금융소비자 종괄기관과 그 외 기관 간의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전협의 절차 포함)
- 바.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5.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에 관한 사항: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권리, 계약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6.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영업행위를 수행하는 담당 임원·직원과 금융소비자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과 보상체계의 설계·운영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8.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 주: 1)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별표 2. 비고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호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나.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 원 미만인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다.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금융상품자문업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상품자문업자를 말한다)
- 라.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명 미만인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2)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별표 2. 비고 2. 제3호 다목에 따른 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나.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다.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라.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 1)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 2) 개인인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자산이 전체 자산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마. 그 밖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종괄기관을 전담하는 사람

<표 II-27>의 3. 가. 부분은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 및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명 미만인 법인 보험대리점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감독규정 별표 2. 비고 1.).

2)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마련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가 있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즉 금융소비자보호기준도 정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제3항, 영 제31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기준도 ‘임직원 및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가 직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라는 점에서 넓게 보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된다.⁸⁰⁾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영 제31조 제3항, 영 제10조 제3항 본문). 다만, (i)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 (ii)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iii)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영 제31조 제3항, 영 제10조 제3항 단서).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변경한 경우에는 제정·개정 사실 및 주요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영 제31조 제3항, 제10조 제4항, 감독규정 제9조 제4항).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필수포함사항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32조 제4항, 영 제31조 제2항).

80) 허환준(2021), p. 43

〈표 II-28〉 금융소비자보호기준 필수포함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동감독규정 제29조

1. 금융소비자의 권리
2.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3.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4.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5. 민원·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6.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감독규정 제29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
 - 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구축
 - 1) 금융소비자의 민원 상황 및 처리결과
 - 2)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 나.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
 - 다.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한 대응
 - 라.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대응
 - 마. 법령 및 약관상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방법
 - 바.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조직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 및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명 이상인 법인 보험대리점들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라 함)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감독규정 별표 2. 3. 가. 및 비고 1.).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자,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 및 사내 임원(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원을 말함)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최고경영자 산하 경영조직의 일부로 둔 것과 같이 경영진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책임을 부여하여 주도적으로 내부통제 주체 간 협력·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자가 주재하는 회의를 매년 반기마다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조정·의결하는 의제는 다음과 같다(감독규정 별표 2. 3. 가.).

〈표 II-29〉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조정·의결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2. 3. 가. 1)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3. 금융상품의 개발,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4.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결과
6.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감독 및 법 제50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중요 민원·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2)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담하는 보험회사 및 법인 보험대리점등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라 함)을 선임하여야 한다(감독규정 별표 2. 3. 가. 2)).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실무자로 이해된다. 여기서 ‘임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별표 2 내에서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원이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 및 사내 임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일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므로(별표 2. 3. 가. 2)) 통일적 해석상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임원일 것, 즉 이사, 감사, 집행임원 내지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외이사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을 선임하는 취지에 맞지 않고, 경영진을 견제해야 하는 감사가 대표자의 관리감독을 받아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을 겸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과 같이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김이 옳을 것이다.

최근 사업 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인 보험회사 및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명 미만인 법인 보험대리점등의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되나, 그 밖의 경우는 별도의 임원을 선임하여 금융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별도로 선임되는 경우 임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없는바,⁸¹⁾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의 준법감시인이 겸직금지 업무를 제외한 후선업무 등을 겸직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요구되는 직무전념의 정도가 강하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의 범위에 금융소비자 보호도 포함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취지 상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에게는 준법감시인보다 한층 강화된 직무전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의 추가 선임이 초래될 수도 있는 사항에 관해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담하는 보험회사 및 법인 보험대리점 내지 법인 보험중개사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함)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감독규정 별표 2. 3. 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대표자 직속으로 설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는 예시적 사항이므로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⁸²⁾

8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1. 3. 17),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2차)”, p. 7

8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1. 3. 17),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2차)”, p. 7

〈표 II-30〉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2. 3. 나. 1)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2.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
3.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민원·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 임원·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7.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위 1.~5.까지의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함)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는바, 이는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및 조직의 소비자 보호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금융 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⁸³⁾

4) 규정 체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은 ‘내부통제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을 뿐 달리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담당임원, 총괄기관 등 운영조직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 규정 없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일부로 감독규정 별표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감독규정에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향후 제도 변경의 유연성을 확보하기에는 유리하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 위임 근거 없이 감독규정에서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8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1. 2. 18),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1차)”, p. 6

첫째, 수법자인 보험회사 등이 내부통제를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담당 임원을 선임하는 등 운영조직을 구성하는 데는 인력적, 비용적 부담이 따르는데 법률에 위임 근거 없이 감독규정만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는 금융소비자보호 역시 포함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내부통제 관련 규정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인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총괄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준법감시인의 업무를 감독규정(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어 법체계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셋째, 운영조직 구성이나 겸직 등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마련 의무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된다.

향후 입법을 통해 법에 최소한의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 위반 시 제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며(법 제69조 제1항 제1호),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도 부과될 수 있다(법 제51조 제1항 및 제52조 제1항, 제2항, 영 제41조 제3항, 제42조 제1항 및 별표 1. 1.).

5. 특정금융정보법

가. 개요

특정금융정보법은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⁸⁴⁾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취하여야 할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등은 (i) 보고책임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 체제를 수립하며 (ii)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을 작성·운용하고, (iii) 임직원에게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내부통제 관련 규제 중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절차 및 업무지침 작성·운용 의무

보험회사는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 등을 서술한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감독규정 제24조 제1항).

업무지침은 다음 표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3항).

84) 금융회사등이란 은행, 보험회사, 체신관서, 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법 제2조, 영 제2조, 감독규정 제1조의2에 열거된 자를 말하며, 보험회사는 금융회사로서 특정금융정보법의 수범자에 해당함(법 제2조 제1호 카목)

〈표 II-31〉 자금세탁 등 방지를 위한 절차 및 업무지침 필수포함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 제3항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영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
 - 가.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다.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라.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마. 금융회사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아울러 업무지침에서는 법 제4조의 규정된 의심거래보고,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확인의무에 관하여 고객 및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의 위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조치내용·절차·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감독규정 제24조 제2항).

다. 보고책임자 임명 및 내부 보고체제 수립

보험회사는 법 제4조 제1항의 의심거래보고 및 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 즉 보고책임자를 임명하고, 내부 보고 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제1호).

보고책임자의 직급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령상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감독당국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경영진을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⁸⁵⁾ 보고책임자는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운용 및 교육·연수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금융회사등의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

85) 진형구·김지웅·이민섭(2018), 단락 3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19조 제2항).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업무규정 제6조).

〈표 II-32〉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6조

1. 의심되는 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2.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총괄
3.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 및 평가
 - 가. 관련 규정 및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영
 - 나. 직무기술서 또는 관련규정 등에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 및 보고 체계 등 명시
 - 다.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 기획자금 조달(이하 “자금세탁행위등”)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라.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 마.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 바.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 사. 자금세탁방지등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 아. 자금세탁방지등 시스템·통제활동의 운영과 효과의 정기적 점검결과 및 그 개선사항의 경영진 보고
 - 자. 금융거래 규모 등 자체 여건을 감안한 전담직원 배치
 - 차. 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4.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 조치
 - 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 나. 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 보고체계 운영상황의 점검·개선사항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등

보험회사가 보고책임자를 임면한 때에는 감독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고책임자 임면통보서에 의하여 당해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여야 한다(영 제9조 제1항, 감독규정 제17조).

보험회사는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보고책임자에게 신속·원활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 보고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19조 제1항).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법정 사항은 아니나 내부 보고사항의 충분한 검토 등을 위하여 독립적인 보고책임자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⁸⁶⁾

86) 금융감독원(2019), p. 23

보고책임자는 보고담당자 변경 등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즉시 개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보고담당자 등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등록·관리할 수 있다(감독규정 제19조 제3항).

라.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보험회사는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교육 및 연수의 일자·대상 및 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20조).

마. 위반 시 제재

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책임자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 수립,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및 연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5조 위반에 대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6. 개인정보 보호법

가. 개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험회사뿐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⁸⁷⁾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후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해 신

87)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용정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게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법규 준수,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적 규제 장치의 하나⁸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정보기반의 신산업 활성화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저장·사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업 내부에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내지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에 대한 준수성·책임성을 확보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상 내부통제 관련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범위, 권한과 의무 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하에서는 (i)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의무, (ii)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iii)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iv) 위반 시 제재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보험회사와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1항, 영 제32조 제2항 제2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 내지 부서장급의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⁸⁹⁾

개인정보 보호법은 ‘임원’의 정의나 범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이처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원칙적으로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부서의 장과 달리 어느 정도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있어야 할 것이다.

88)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p. 281

89) 조은별(2021), 단락 1

한편,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영 제32조 제3항 본문).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영 제32조 제3항 단서). 이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영세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①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인 기업을 의미한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연락처의 공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되지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문언은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기재하라고만 되어 있는바(법 제30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기재와 고충처리부서의 명칭 기재 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⁹⁰⁾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표의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31조 제2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이 같은 업무는 총괄책임자로서 지는 업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분야별로 개인정보취급자⁹¹⁾를 두어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⁹²⁾

90) 조은별(2021), 단락 11

9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개인정보취급자)를 적절히 관리·감독하고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법 제28조)

92)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p. 282

〈표 II-3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2항, 영 제32조 제1항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영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
 - 가.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다.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의무·신분보장

1) 권한 및 의무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법 제31조 제3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전사적인 책임을지는 자이므로 소속 부서에 관계없이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⁹³⁾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의 경우에 한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른 관계 법령, 예컨대 신용정보법 등 다른 개별 법령 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93)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p. 283

2) 신분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1조 제5항).

마. 위반 시 제재

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75조 제4항 제8호).

7. 신용정보법

가. 개요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⁹⁴⁾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3항).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회사들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해야 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속한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유사하게 신용정보 법규 준수, 유출 및 오남용 방지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신용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자율적 규제 장치라 볼 것이다. 신용정보법은 기업 내부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신용정보 유출 내지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용정보 보호 법규에 대한 준수성·책임성을 확보하여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며, 개인신용정보 관련 업무 및 권한과 의무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9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영 제2조 제6항 제7호 가목부터 하목 까지 및 제2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말함(법 제20조 제3항, 영 제17조 제1항)

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3항, 제7항, 영 제17조 제3항).

〈표 II-34〉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요건

신용정보보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1. 사내이사
2.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
3.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른바 사실상의 이사)로서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제공·활용·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

그러나 직전 사업 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 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⁹⁵⁾가 300명 이상인 보험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반드시 임원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3항 단서). 신용정보법상의 임원은 이사, 감사, 집행임원을 말하는데(법 제2조 제18호 나목 2.), 법 제2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임원은 집행임원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정한 사실상의 이사⁹⁶⁾를 말한다(법 제20조 제3항 단서, 영 제17조 제4항).

다른 법령에 의한 준법감시인이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영 제17조 제5항). 다만,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은 사내이사, 집행임원 또는 사실상의 이사에 해당해야 한다(영 제17조 제5항 단서).

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6항에 의거 고객정보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

95)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함(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2조의2 제1항)

96)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말함

호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⁹⁷⁾ 그 고객정보관리인은 보험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간주된다(법 제20조 제8항).

한편,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와 관련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성명 또는 신용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법 제31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성명 기재는 고충처리부서의 명칭 간에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아래 표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용정보법 제20조 제4항).

〈표 II-35〉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

신용정보법 제20조 제4항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업무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정하는 다음의 업무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목의 업무
 - 가.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97) 신용정보법 제20조 제8항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6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제6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7항의 자격요건’의 오기임

영 제17조 제5항에 의거, 준법감시인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 제4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선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영 제17조 제6항).

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권한과 의무·신분보장

1) 권한 및 의무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가 부여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법 제20조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제3항).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전사적인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소속 부서에 관계없이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당해 연도 1분기 말까지 (i)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직전 연도 중 법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 및 (ii) 위 (i)의 실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지 제8호의3 서식에 따라 금융보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용정보법 제20조 제6항, 영 제17조 제8항, 감독규정 제22조의2 제3항).

2) 신분보장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바, 보험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0조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제5항).

마. 위반 시 제재

법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임요건을 위반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법 제52조 제3항 제2의2호), 법 제20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52조 제2항 제4호).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가능하다(법 제45조 제7항).

8. 전자금융거래법

가. 개요

전자금융거래법은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등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를 부과하고(법 제21조 제1항), 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의무(법 제21조 제2항)와 매년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법 제21조 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게 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등의 내부통제를 수행하도록 하며(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항), 정보보호 관련 인력 및 조직 운용에 관한 준수사항 및 중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감독규정 제8조, 제8조의2, 제26조 제7호).

전자보험거래를 하는 금융회사인 보험회사가 수범자에 속함은 물론이나, 전자금융업자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을 제외하면 보험대리점 등록이 불가(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제5호, 영 제32조 제1항 및 제2항)하므로 일반적으로 법인 보험대리점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수범자에 속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전자보험거래를 하는 보험회사에 관해 적용되는 내부통제 관련 규제를 서술한다.

나. 정보보호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중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8조의2 제1항).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며, 위원은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전산운영 및 개발 관련 부서장, 준법업무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감독규정 제8조의2 제2항).

정보보호위원회는 IT업무 추진위원회와 구분되어야 한다.⁹⁸⁾ 효율성을 중시하는 IT현업 관련 위원회와 보안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는 이해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감독규정 제8조의2 제3항).

〈표 II-36〉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감독규정 제8조의2 제3항

1.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3. 법 제21조의3에서 정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및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전산보안사고 및 전산보안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감독규정 제8조의2 제4항), 최고경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8조의2 제5항).

98) 금융감독원(2017), p. 34

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의무

보험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법 제21조2 제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법 제21조의2 제1항).

직전 사업 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 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⁹⁹⁾가 300명 이상인 보험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는데(법 제21조의2 제2항, 영 제11조의3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임원은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상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는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함께 규모가 작은 회사에 비해 금융 IT 사고 시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 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¹⁰⁰⁾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및 의무

보험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법 제21조의2 제4항, 영 제11조의3 제3항).

〈표 II-37〉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제4항

1.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영 제11조의3 제3항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
 - 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 나.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99)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를 말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의2 제1항)

100) 박배효(2018), 단락 2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보험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21조의2 제5항, 영 제11조의3 제4항). 이러한 자격요건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관련된 것이다.

〈표 II-38〉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별표 1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다음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전자정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감리원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인증 심사원
 -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을 받은 정보보호전문가(Specialist for Information Security)
 - 5)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의 정보시스템감사사(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 6)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ertified Information System Security Professional)
 - 나.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2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8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10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7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3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 제한

직전 사업 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 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보험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서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 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법 제21조의2, 영 제11조의3 제2항).

이는 정보기술부문을 총괄하는 정보화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와 같이 정보기술부문 담당자가 이를 겸직하는 경우 보안보다 효율성을 중시하여 보안성에 대한 주의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¹⁰¹⁾ 겸직 제한을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임원지정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보다 좁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부담 가중 및 인력수급의 현실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¹⁰²⁾

라. 정보보호 인력, 예산 및 조직운영에 관한 준수사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가 준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4호).

또한, 정보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보안 점검항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 및 보완 계획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37조의5).

최고경영자에게 매월 보고가 필요하나 반드시 결재를 요하지는 않으며, 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보고와 감독규정 제37조의5의 보고는 함께 이루어져도 무방하다.¹⁰³⁾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제재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8조 제1항 제5호).

한편, 감독규정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총 임직원 수의 100분의 5 이상, 정보보호 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고, 정보보호 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10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감독규정 제8조 제2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101) 박배효(2018), 단락 3

102) 박배효(2018), 단락 3

103) 금융감독원(2017), p. 115

조항은 202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조항으로 현재 일몰되어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보험회사는 정보기술부문 인력과 정보보호 인력을 분리 운영하는 등 그 밖에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직무 분리가 요구되는 경우 직무를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감독규정 제26조 제7호 및 제8호).

마. 위반 시 제재

(i) 법 제21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및 (ii) 법 제21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5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도 가능하다(법 제39조 제6항).